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수 신 전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

참 조 시설 관리 담당

제 목 「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에 대한 소각·매립업계 건의의견  
제출 알림 및 추가 의견제출 요청

1. 한공조 375호[「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18.9.13] 관련입니다.

2. 국회 송옥주 의원실('18.9.6)에서 입법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소각전문중간처분업자는 폐토사·불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혼합 반입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별 후 매립시설 재위탁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에서는 소각·매립업계 관계자 회의('18.9.28) 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불임과 같이 적극 찬성 의견을 환경부, 환노위 및 의원실에 제출하였습니다.

3. 아울러 아직 국회 환노위에서 동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바, 추가 의견이 있는 조합원사에서는 불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8.10.31(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부 등과 업무협의를 계속 진행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에 대한 소각·매립업계 건의의견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담당 김정훈 팀장 한인성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진원기 이사장 박무웅

협조자

시행 한공조 2018 - 419호 (2018. 10. 16) 접수

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에 대한 소각업계 건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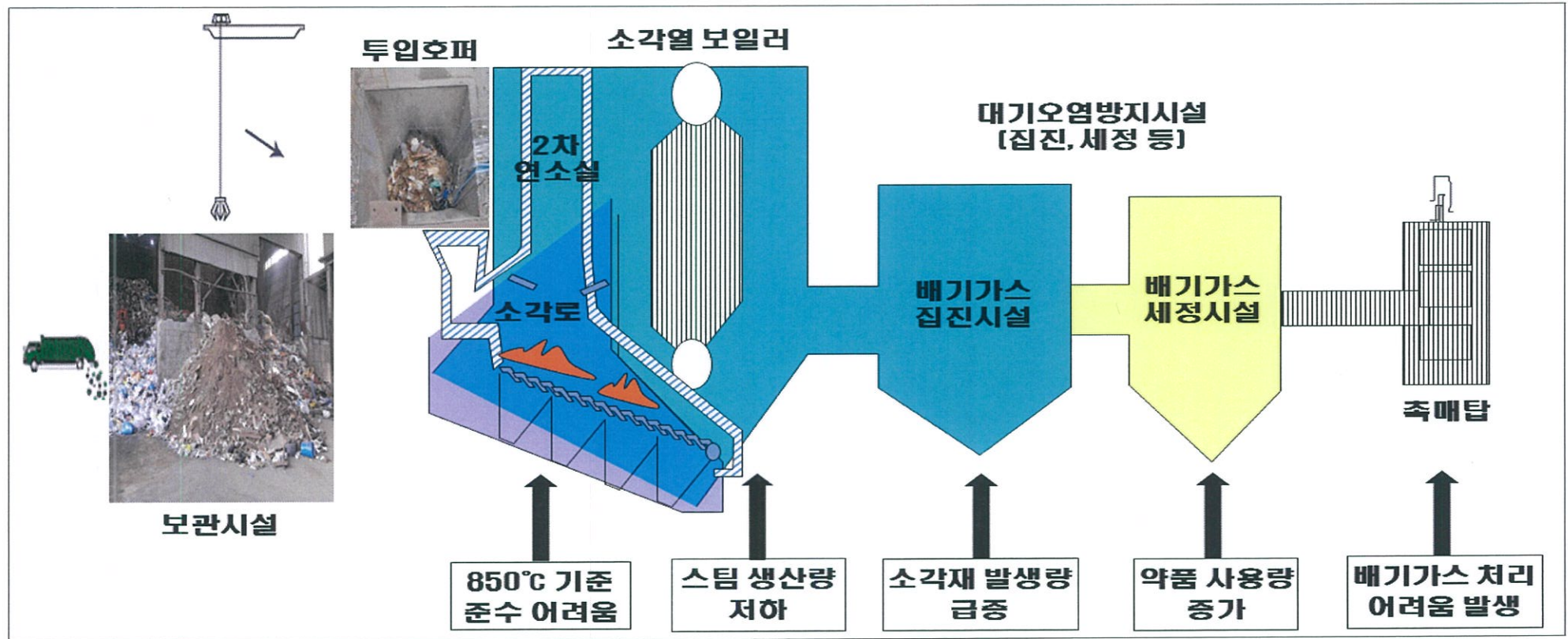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18.10.5)

개정안	업계 의견	이유
<p>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⑰ (현행과 같음)                      ⑱ 제9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중 소각 처분의 방법을 사용하는 자는 폐토사, 불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폐기물을 위탁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선별하여 최종처분 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다.</p>	<p>○ 수정의견 없음                      ○ 개정(안) 찬성</p>	<p>1.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전·운영 가능                      - 영업대상 폐기물만 반입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혼합건설 폐기물 및 비위생 매립지 굴착 폐기물의 경우 다량의 폐토사·불연물이 혼합된 상태로 소각시설로 반입                      - 혼합건설폐기물 및 비위생 매립지 굴착 폐기물 등에서 폐토사·불연물을 사전 선별할 경우 일정한 발열량 유지가 가능하여 오염물질(다이옥신, SOx, NOx 등)의 효율적인 저감 가능                      - 소각시설 운영기준 준수, 보조연료 사용 최소화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가능                      - 불연물·폐토사 등 소각에 따른 화격자 끼임, 소각로 내벽 및 화격자 손상 등 방지</p> <p>2. 매립대상 폐기물인 중금속 오염 소각재 발생 최소화 가능                      - 폐토사·불연물 사전 선별을 통해 소각 시설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각재 발생 최소화 가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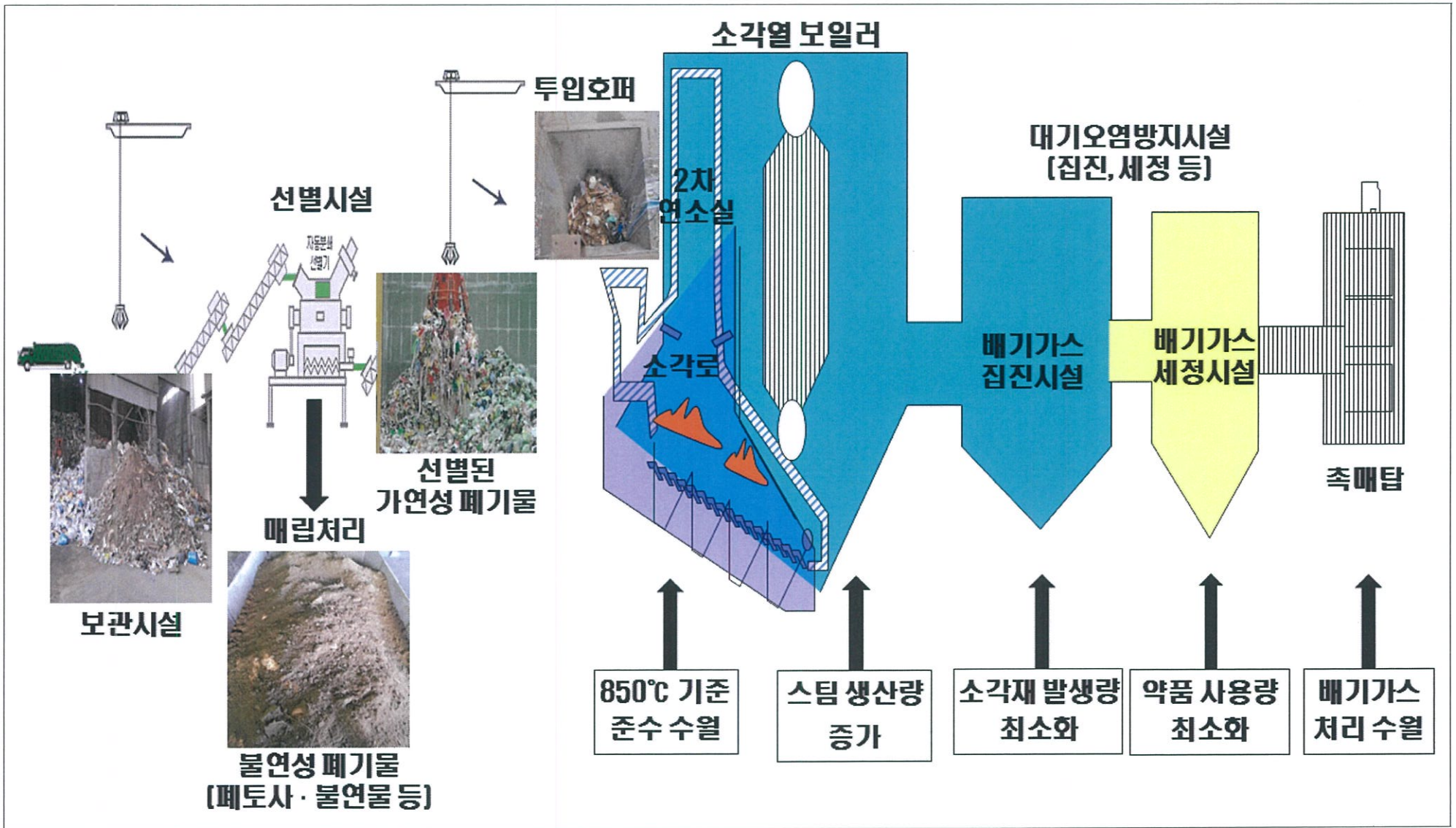
# 한국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개정(안) 찬성 사유

## 1 폐토사·불연물이 소각시설 공정에 미치는 영향

### 가. 폐토사·불연물 혼합 소각 시



나. 폐토사·불연물 선별 소각 시



## 2 폐토사·불연물 사전선별 제도개선에 대해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답변

### □ 「폐토사·불연물 사전선별 입법예고」 관련 소각·매립업계 관계자 회의 개최

- 일 시 : '18.09.28(금), 14:00~16:00
- 장 소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회의실
- 참 석 자 :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운영부서장 20명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업계 모두 소각전문중간처분업자에 대한 “폐토사·불연물 사전선별 및 매립 시설 재위탁 허용” 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함

1) 배출자는 왜 폐토사·불연물을 혼합하여 비싸게 소각 처리하는지 ?

- 73개 소각업체 거래처는 336만개로 추정되며 이들 각 현장의 폐기물 발생실태, 배출 구조 등은 천차만별. 특히 월 10톤 미만의 소규모 배출현장은 폐토사, 불연물 선별 의지 또는 여건 불비로 혼합배출 불가피
- 심지어 LH공사 같은 대형배출처도 현장여건상 대형·대량 재활용 성상 배출 후 잔재물은 공정·공기 등의 이유로 소각으로 혼합 배출



소규모 배출현장



LH공사 배출현장

## 2) 소각업체는 왜 저열량을 호소하면서 폐토사·불연물을 반입 받는지?

- 73개 소각업체 일일 반입 차량은 2천여대에 달하고 검수는 지정폐기물 등 유해성 높은 폐기물에 한정되어 있어 폐토사 혼합 반입 시 검수 불가능
- 성상이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달리 산업폐기물의 경우 성상의 편차가 극도로 심하여 이를 선별 반입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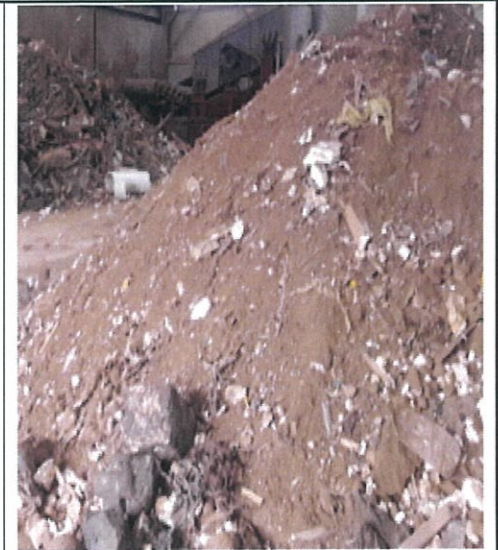
생활폐기물  
(정상 균질)



중간가공폐기물 및 SRF  
(정상 균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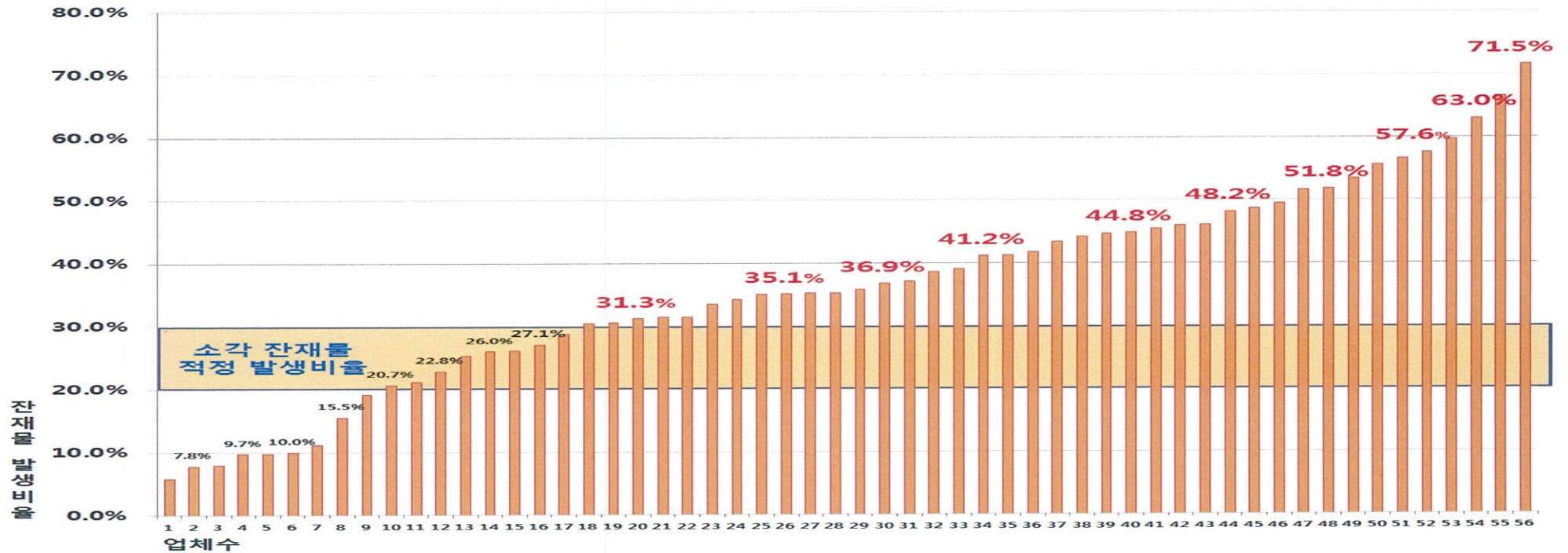
산업폐기물  
(정상 불균질)



선별된 폐토사, 불연물

### 3) 소각처분업자에게 소각·매립물 혼합위탁처리는 배출기준에 부합하는지?

- 배출처의 선별 배출이 전제된 폐기물 중 불가항력으로 반입되는 폐토사·불연물을 소각로 정상가동을 위해 투입 전 선별하게 해달라는 것임. “혼합 위탁처리”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한 “교육지책”임



<최근 5년간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발생현황('13~'17년)>

\*출처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중간처분(소각)업체의 폐기물 처리실태 조사



4) 소각처분업자에게 폐기물 분리·선별 허용은 명분없는 특혜이고 불법행위 합법화이며, 선심성 입법 인지?

- 신규 소각시설 설치 제한으로 지역 민원 해소,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인근 기업 고효율 소각열 공급 등 국가와 국민, 기업 모두에게 명분있는 제도 개선이며,
- 불법행위의 합법화가 아닌 현행 제도와 실제 폐기물처리체계의 엇박자를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임
- 국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으로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조사에서도 문제 해결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음



국회토론회('18.3.5)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심포지엄('18.5.11)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조사(소각업체, 배출업체 / '18.6월)

5) 폐기물배출업자가 매립대상 폐기물을 소각처분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도 소각처분업자가 이를 수탁하여 매립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폐기물배출업자의 의무 규정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 동 개정법률안은 배출처의 선별 배출이 전제된 폐기물 중 불가항력으로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폐토사·불연물로 인한 소각재 대량 배출, 소각시설 수명 단축 등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각로의 정상가동을 위해 투입 전 배출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반입된 폐토사·불연물을 선별토록 하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현행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수탁자가 해당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에서도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각업체로의 폐토사·불연물은 지속 반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남

6) 폐기물소각시설의 용량 및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 위탁이 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 현행법 상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자는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 반입, 처분 등의 모든 자료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토록 되어 있는 바,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 및 능력을 초과한 폐기물 수탁은 불가능함

- 특히, 소각업체의 경우 타 폐기물 처리업체와 달리 반입 받는 폐기물 전량을 보관창고 내 보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 수탁 자체가 불가능함

**7) 소각처분업자가 폐토사·불연물이 포함된 폐기물을 소각시설 투입하기 전에 선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 일부 소각업체의 경우, 지자체 승인을 득하여 이미 폐토사·불연물에 대한 배출자 신고 후 분리·선별 공정을 통해 반입폐기물 중 혼합된 폐토사·불연물을 사전선별 배출하고 있음 결국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이 금번 발의법안의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음

**8) 매립대상 폐기물을 혼합하여 소각처분업자에게 위탁하는 문제를 소각처분업자의 재위탁 허용 규정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업자에 대한 단속·점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현재 전국 73개 소각업체의 폐기물배출처는 336만개로 추정되며, 이들 각 현장의 폐기물 발생실태, 배출구조 등은 천차만별로 특히, 월 10톤 미만의 소규모 배출처의 경우 폐토사·불연물에 대한 선별 의지 또는 장비·시설 등 여건 불비로 폐토사·불연물 혼합배출이 불가피한 실정임  
심지어, LH공사 같은 대형 배출처도 현장여건 상 대형·대량 재활용 성상의 폐기물 선 배출 후 잔재물은 공정·공기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소각업체로 혼합 배출하고 있음

9) 소각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립대상 폐기물 위탁을 허용하게 되면, 소각처분업과 매립처분업 등 업종간의 혼란을 유발할 우려는 없는지?

- 소각업체는 법적으로 영업대상 외 폐기물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반입된 폐토사·불연물만 선별하는 것으로 소각처분업과 매립처분업의 영업대상 폐기물이 중복되지 않아 업종간의 혼란을 유발할 우려도 없으며, 심지어 매립업체에서도 소각처분업자에 반입되는 폐토사·불연물 선별을 통한 매립시설 위탁은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을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어 적극 동의하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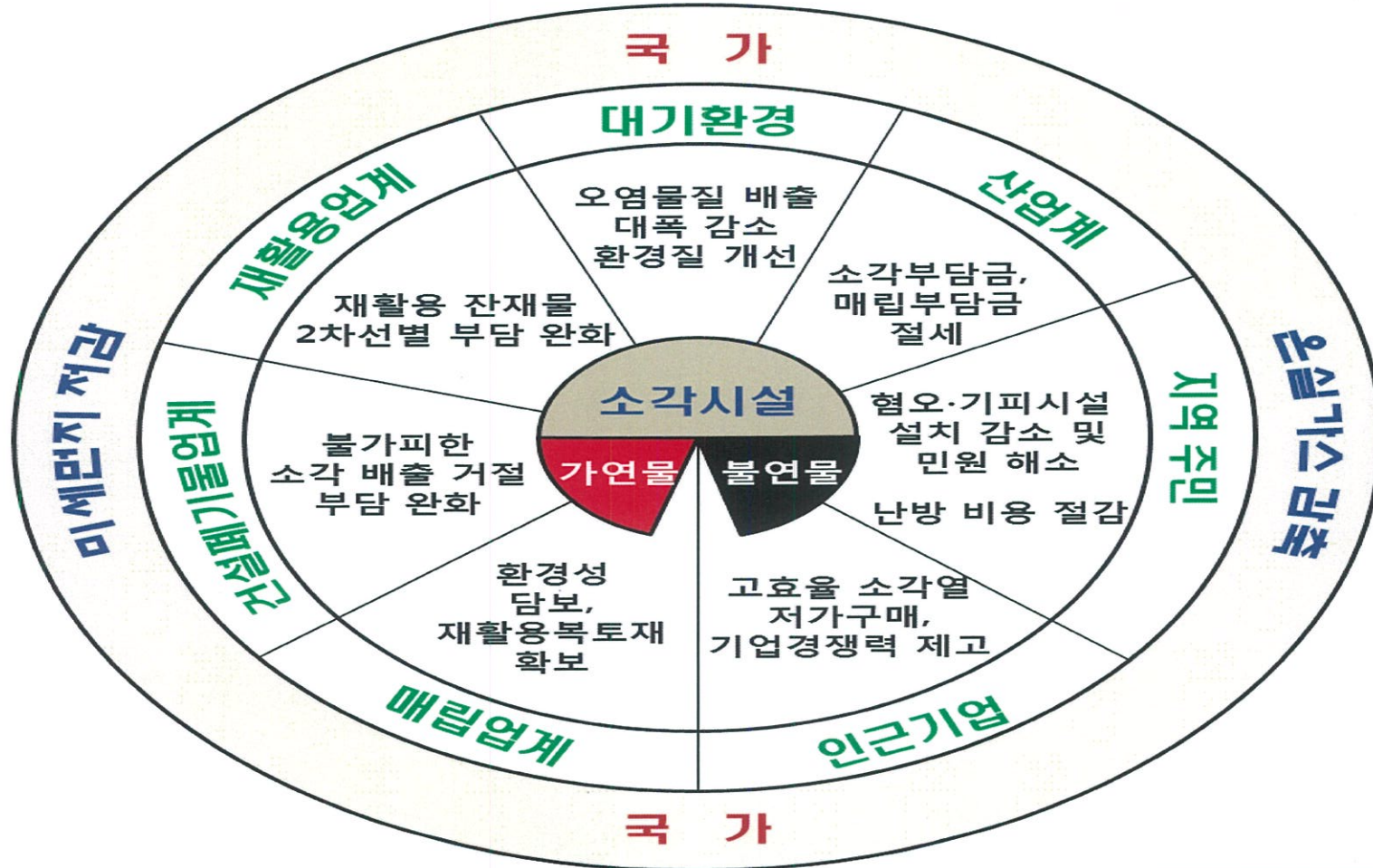
10) 재위탁을 허용하게 되면 소각처분업자가 매립비용보다 높은 처리 비용을 받은 후 이를 그대로 매립업자에게 낮은 비용으로 재위탁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 동 개정안 발의시, 소각업체도 폐토사·불연물을 단순 재위탁하는 것이 아닌 분리·선별 공정을 거친 토사와 불연물만을 매립 재위탁하므로 사전선별을 위한 전처리 시설 도입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 불가피하게 폐토사·불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는 매립배출이 된다는 전제하에 오히려 소각 비용을 깎을 수 있는 여지가 시장에서 만들어 지는 것임.
- 또한, 폐토사·불연물이 혼합되어 반입된 가연성폐기물의 직매립으로 인한 차익 취득 우려도 오히려 가연성·불연성이 혼합된 폐기물의 비중(약 0.5이하)을 감안할 경우 동일한 양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비용보다 매립하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하고, 매립업체에서도 잔여매립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연성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매립시설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음

11) 소각처분업자에게 폐기물 분리·선별 기능부여는 국가와 국민에게 사회·경제·환경적 실익이 전무한 것인지?

- 불연물·폐토사 사전 선별 시 소각시설의 오작동, 잦은 기기고장 발생 예방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효과 발생
  - ※ 부산시도 소각장 불연물 처리로 시설의 고장이 빈번하여 효율 향상과 소각부담금 감면을 위해 불연물 사전 분리·선별 추진 중
- 국내 소각처리량 최소화로 혐오·기피시설인 신규 소각시설 설치 시도가 줄어 국민적 갈등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배출도 저감
- 소각열에너지 생산 및 공급 극대화로 인근 기업과 주민들의 운영비와 생활비 혜택으로 경제 선순환 직접요인 작용
- 소각열 회수효율 향상으로 소각업체의 에너지회수 기준 충족 여건이 조성되어 산업계에 소각부담금 감면 혜택도 부여
- 특히, 동종폐기물 업계에도 혜택이 부여됨
  - 건설폐기물업계
    - 사전선별 했음에도 발생한 폐토사·불연물 소각 배출 시 소각업체 반입 거절로 인한 처리 어려움 해소 기대
  - 재활용업계
    - 재활용 잔재물에 포함된 폐토사·불연물 소각배출을 위한 불필요한 2차 선별 비용 절감
  - 매립업계
    - 선별된 폐토사·불연물 매립장 복토재 재활용으로 오염 최소화 및 매립 수명 연장 효과

# 소각시설 불연물·폐토사 선별시, 사회·경제·환경적 기대 효과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에 대한 매립협회 건의의견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18.10.5)

개정안	업계 의견	이유
<p>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⑰ (현행과 같음)                      ⑱ 제9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중 소각 처분의 방법을 사용하는 자는 폐토사, 불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폐기물을 위탁받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선별하여 최종처분 시설에 재위탁할 수 있다.</p>	<p>○ 수정의견 없음                       ○ 개정(안) 찬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금속 및 다이옥신 오염 소각재 매립 최소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 후 배출되는 불연물, 폐토사 등은 중금속 및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매립될 경우 주변환경 오염을 야기</li> </ul> </li> <li>2. 매립시설 매립량 최소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전문중간처분업에서 사전 선별된 소각재가 반입 되므로, 불필요한 폐기물이 감소하여 매립 최소화 가능</li> <li>-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 발생량 대비 지자체 및 주민 반대, 입지가능 부지 감소 등으로 매립시설의 신규 설치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매립 용량 확보 가능</li> </ul> </li> <li>3. 폐토사의 재활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별된 폐토사 중 오염도가 낮은 폐토사는 매립장 복토재 및 사면 구축용으로 활용 가능</li> </ul> </li> </ol>

#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개정[안] 찬성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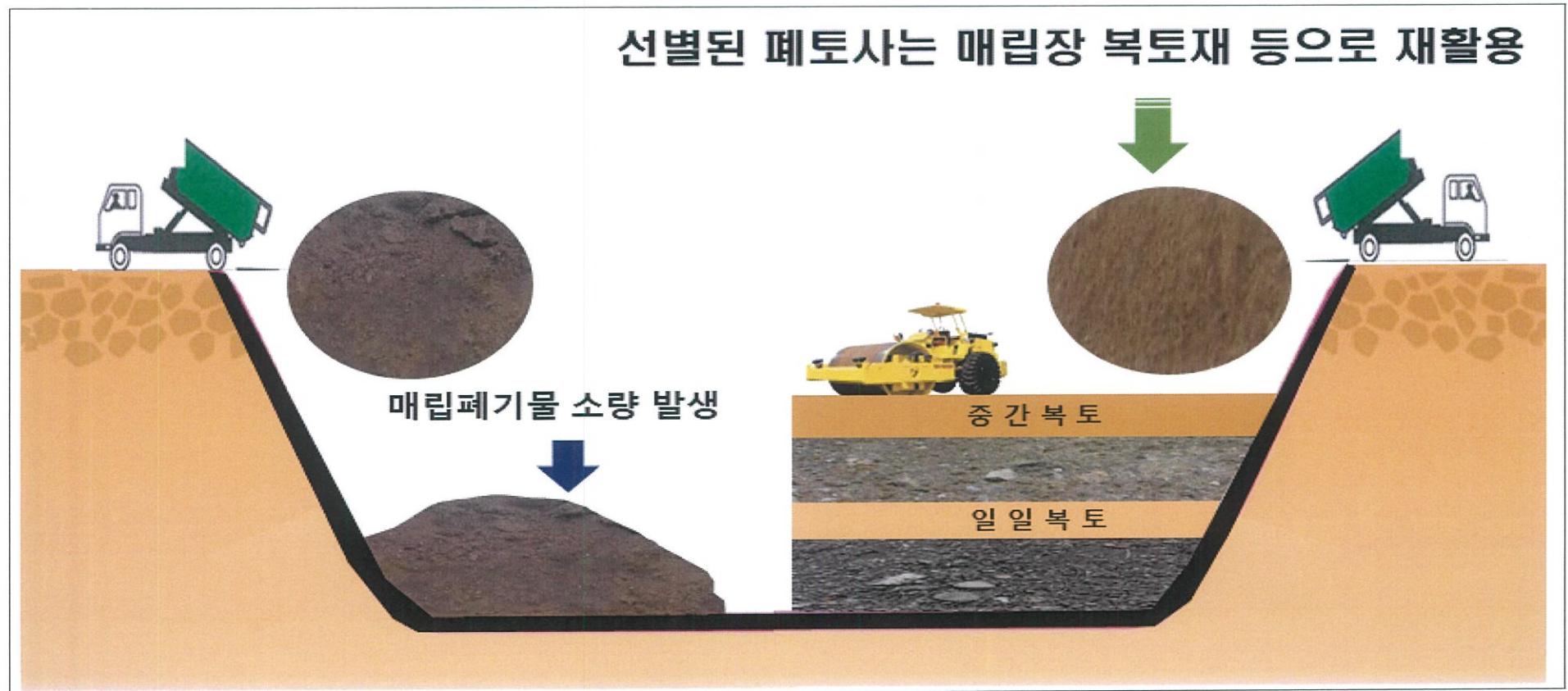
## 1 폐토사·불연물이 매립시설 공정에 미치는 영향

### 가. 폐토사·불연물 혼합 매립 시





## 나. 폐토사·불연물 선별 매립 시



## 2 결론

- 동 개정(안) 발의 시, 재활용 복토재 확보 및 추가 매립부지 확보가 절실한 현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

## 「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 관련 추가 건의의견

입법발의(안)	수정 건의(안)	사유

2018. 10. .

업 체 명 :

담 당 자 :

연 락 처 :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귀중